

# 공공공사 조기발주 부작용 '물량부족' 심화

### 건설업계 수주액 43% 늘었지만 하반기 공사 없어 경영난 우려

올해 상반기 도내 건설업계의 수주금액이 크게 증가한 반면 하반기에는 물량 부족으로 매출절벽이 우려되고 있다.

지역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 공사 수주금액은 8,53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963억원보다 4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도를 비롯한 지자체와 각 공공기관의 조기 집행이 활발하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공공공사가 상반기에 집행되면서 하반기 공사물량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나라장터를 통해 공고된 도내 공사물량은 6월 한 달간 100건에서 7월에는 20건으로 5분의 1로 감소했다.

또 올해 전체 공공공사 발주물량 규모가 지난해보다 크게 감소했다.

올해 공공기관 공사물량은 지난해 대비 6,146억원이나 줄어든 3조4,249억원이다. 특히 지난해 2조5,627

억원에 달했던 100억원 이상 대형공사도 올해는 1조6,192억원에 불과해 지난해보다 9,435억원 줄어들었다. 10억원 미만 소규모 공사가 3,166건 5,891억원으로 전체의 86.1%나 차지해 수주 경쟁에 따른 일부 업체 적자시공도 우려된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형공사와 공공공사 물량이 감소해 하반기 심각한 건설업체 경영난이 우려된다"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민간기업 투자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위윤기자

# 警,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정조준'

### 대여업자 잇따라 적발... 무자격 시공 근절 기대

경찰이 건설업 등록증 불법 대여와 무자격 시공을 정조준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경찰이 불법 대여업자 적발을 확대하자 시장에 만연한 무자격 불법시공 근절의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종합건설회사 대표 A(46)씨 등 2명과 건축주 B(53)씨 등 12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공사를 직접 하지 않고 건설업 등록증 대여만으로 회

사를 운영하는 '대여업자'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전국 건설현장 800여곳을 돌며 강모씨 등에게 등록증 등을 빌려주고 평균 300여만원씩 총 24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앞선 7일에는 인천 부평경찰서가 같은 혐의로 C(54)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에게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 시공한 260명 등 총 26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C씨 등은 작년 7~12월 전문 브

로커 4명을 고용, 수도권 공사현장 959곳에 건당 200만~800만원을 받고 건설업 등록증을 빌려줘 약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의 불법 대여 적발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부평경찰서는 지난 2월에도 건설현장 534곳의 무자격자에게 건설업 등록증 등을 대여해 20억여원을 챙긴 혐의로 D씨를 구속했다. D씨에게 등록증을 빌려 공사한 무자격자 2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김정석기자 jskim@ ▶2면에 계속

자본금 등록기준, 재무 검증시스템 '떡통' 속

# 행정처분권 무기로 건설업체 사형선고 남발 '분통'

(영업정지)

2018년 주기적 신고 제도가 폐지되고 실태조사가 확대·시행되는 전환기를 맞아 '건설업 관리규정'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와 부실업체를 걸러내는 순기능의 이면에는 '갑(甲)질 공무원'을 양산해 건설한 업체들의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재무진단 감리 '보이콧'만큼 공무원 전문성 부족 큰 문제

영업정지 처분 감경 사유 담당공무원에 소명 관건 업계 "찍히면 회생 불가"

'주기적 신고제'→'실태조사' 전환 앞두고 제도 손질 필요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이 현실과 동떨어져 등록 기준 미달업체의 소명 기회를 박탈하는 등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 9일자 2면 참조)

자본금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된 건설업체가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이하 재무진단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 검증 시스템이 멈춰섰기 때문이다.

표면적으로는 재무진단서에 대한 적정성을 판단해줘야 할 한국공인회계사회 기업진단감리위원회의 '보이콧'이 직접적인 원인이다. 하지만 기업 재무진단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과 건설업 행정처분을 맡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더 큰 문제라는 지적이다. 재무진단서 작성은 회계사와 세무사, 경영지도사만 할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작성한 재무진단서를 믿지 못하니 이를 재검증하면서 문제가 생겼다"며 "부실 건설사를 진짜 숨이내고 싶다면 부실 재무진단서를 발급한 회계·세무·경영지도사부터 영구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성은 부족하면서도 행정처분권을 무기로 건설업체를 쥐락펴락하는 지자체 공무원들도 문제다.

경기도 한 공무원은 규정을 무시한 채 건설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받고 '철회'를 결정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해당 지역 건설업계에선 행정처분 남발로 악명이 높은 공무원"이라며 "기업에 사형선고(영업정지 대상통보)와 사형집행(영업정지 처분) 권한을 가진 공무원에게 맞설 건 건설사는 없다"고 털어놨다.

행정처분 담당 공무원의 갑질은 현행 규정이 '보장'해주는 측면이 크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감경 사유를 보면 ①벌령해석상의 착오 등으로 위반행위를 한 후 시정을 완료한 경우로서 정상을 잠작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③영업정지 처분 후 건설업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경우 등이다.

이 중 ②와 ③은 해당 업체의 몫이고, 나머지 ①은 해당 지자체의 유권해석에 달려 있다.

하지만 업체 입장에선 ①이 가장 중요하다. 등록기준 미달로 인한 영업정지 기간은 6개월이다. 여기서 ②와 ③을 감경받아도 4개월 15일이다. 추가로 ①을 감경받아야 4개월 미만으로 줄어든다. 영업정지 4개월 미만은 건설공제조합의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마지노선이다.

건설공제조합 관계자는 "영업정지 기간이 4개월 미만인 경우에만 계약·공사이행, 하자보수 등 기존 공사에 대한 추가 보증을 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재무진단서 제출 등 적극적으로 소명하다가 담당 공무원한테 찍혀 5개월 영업정지를 받으면 회생불능"이라며 "고분고분해야 1개월 추가 감경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영업정지 종료 후 생사여탈권을 담당 공무원이 쥐고 있는 것도 갑-을 관계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행 건설업 관리규정은 영업정지처분 종료 30일 전에 재무진단서를 제출받아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달 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있다.

3년 단위의 주기적 신고제 대신 1년 주

기의 실태조사가 시행되면 이 같은 문제가 더욱 불거질 수 있다. 전수 조사가 원칙인 주기적 신고제에 비해 실태조사는 폐이며 검토나 부적격 의심업체만 선별해 조사를 발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매년 실태조사를 벌이면 그만큼 자본금 기준 미달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날 것"이라며 "본격적인 제도 시행에 앞서 제도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건설업계 관계자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걸러진 업체 '열 중 아홉'이 등록기준 미달업체라 하더라도 단 하나의 건설한 업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소명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나치게 엄격하고 분쟁 소지가 많은 자본금 기준을 손질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임대 부동산 등은 겸업자산업으로 분류해 실질 자본금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과연 타당한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공인회계사회의 감리업무 중단에 대한 보완책을 포함해 제도 전반을 재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태형기자 kth@